

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 
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#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최정훈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○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시행으로 기존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,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○ 명칭변경 :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유산 체제에 맞게 기관 명칭변경

(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→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)

○ 제3조(사무소) : 부설기관 설치 조항 추가로 향후 사업영역 확장

○ 제5조(사업) : 국가유산 체제에 맞게 기존 사업영역 확장

○ 제6조(재원의 조성) : 출연금

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명칭을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「국가유산기본법」의 제정에 따른 용어 불일치를 해소하고, 연구원의 역할을 충청북도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걸친 연구기관으로 재정립하는 데 적합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3조는 연구원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유산 발굴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전반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될 경우 부설기관 설치 필요성은 인정됨.
- 안 제5조는 연구원의 사업을 각 호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타당함. 특히, 기존 역사문화의 발굴이나 조사 외에도 역사문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, 관련 시설 등의 위탁 운영 및 관리까지 아우르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### <개정안 조문대비표>

현 행	전부개정조례안
<p>제5조(사업)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수탁 사업 등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문화유산의 조사(지표조사, 발굴조사, 학술조사 등을 포함한다)와 연구 및 자료발간</li> <li>2. 문화유산(지정문화재, 비지정문화재, 매장문화재를 포함한다)의 보호·관리</li> <li>3.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수장 전시</li> <li>4.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</li> <li>5. 그 밖에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</li> </ol>	<p>제5조(사업) 연구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역사문화의 발굴·조사·연구</li> <li>2. 역사문화자원의 보존·관리·활용</li> <li>3. 역사문화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</li> <li>4. 역사문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</li> <li>5. 관련 시설 등의 위탁 운영 및 관리</li> <li>6. 그 밖에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</li> </ol>

- 안 제6조는 기존 출연금뿐만 아니라 용역 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, 지식재산권 등의 수익금 및 출판물 판매 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연구원의 재정 기반을 다각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<개정안 조문대비표>

현 행	전부개정조례안
<p>제6조(재산출연)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충청북도 및 시·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</li> <li>2. 출연을 원하는 기관·단체 및 기업체, 대학 등 기타 출연금</li> </ol>	<p>제6조(재원의 조성)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충청북도 및 시·군의 출연금·보조금·대행사업비 또는 현물</li> <li>2. 개인·기관·단체 등의 출연금</li> <li>3. 용역 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</li> <li>4. 지식재산권 등의 수익금 및 출판물 판매 대금</li> <li>5. 교육 등 그 밖의 수입</li> </ol>